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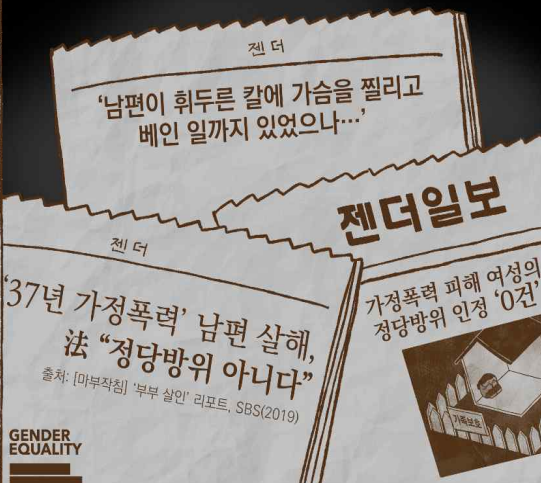
2020년,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은 여전히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며 가해자의 상담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도 남아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제1조(목적) 이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GENDER EQUALITY

오랜 시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젠더
'남편이 휘두른 칼에 가슴을 찔리고 배인 일까지 있었으나...'

젠더일보
'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法 "정당방위 아니다"
출처: [마부작침] '부부 살인' 리포트, SBS(2019)

젠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0건'

GENDER EQUALITY

한국여성의전화는 최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로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과 대결 상황에서의 젠더불균형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과제

GENDER EQUALITY



<참고 문헌>

<인천 가정폭력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 오마이뉴스 / 2000-07-08
 아내잔혹폭행 가정폭력사건 파문 / 2000-05-02 / 중부일보
 인천여성의전화 내용 협조

